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75****-1), 회사원
검 사 김미지(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24. 00:13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찢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母)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_____